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5. 2. 18.(화)  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-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1호
- 제출자 : 금산군수
- 제출일 : 2025. 2. 6.
- 회부일 : 2025. 2. 7.

## 2. 제안이유

- 2024년 12월 말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 (안 제2조제1항)  
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⇨ (개정안) 2026년 12월 31일 (2년 연장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17조
 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- 기 타
  -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(2024. 12. 3.) : 원안가결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담당관-17077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담당관-16826)

-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인구교육가족과-40886)
- 입법예고(2024. 12. 30. ~ 2025. 1. 20.) : 제출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,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이 조례의 일몰 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음에도 5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그밖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